

소속관서

제 0000-00000 호

0000.00.00.

수 신: 수신인 귀하

제 목: 수사결과 통지서(피의자·병존사건)
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접 수 일 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 건 번 호 |                |
| 죄 명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결 정 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결 정 종 류 | 1. 송 치 ( ): 송치관서명(☎: 전화번호)<br>2. 이 송 ( ): 이송관서명(☎: 전화번호)<br>3. 수사중지 ( )<br>4. 불 송 치 ( ) |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주요내용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담 당 팀 장 | ○○과 ○○팀 경○ ○○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☎ 02-0000-0000 |

※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

<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>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
  - 국민신문고 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
-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
  - [www.humanrights.go.kr](http://www.humanrights.go.kr), 국번없이 1331
- 수사 심의신청 제도(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)
  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시·도경찰청 「수사심의계」에 심의신청
-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
  -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,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
  -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

<불송치결정 종류 안내>

-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.
-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·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.

소속관서장 직인